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해식·서영교·조 국

박상혁 • 윤준병 • 정을호

한병도 • 염태영 • 김태선

황명선 • 박정현 • 서영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설치·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.

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2(주민자치회)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· 면·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(이하 "주민자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
  - 2. 읍·면·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· 면·동장과의 협의
  -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
  - 4.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
  - 5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·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, 명예직으로 한다.
  -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

정인을 지지 ·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 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 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4항에 따라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따라 구성·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의2(주민자치회)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・면・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(이하 "주민자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. 읍・면・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・면・동장과의 협의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.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・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.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

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 민자치회가 선정하며, 명예직으 로 한다.

-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 는 특정인을 지지・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- ①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 의체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.